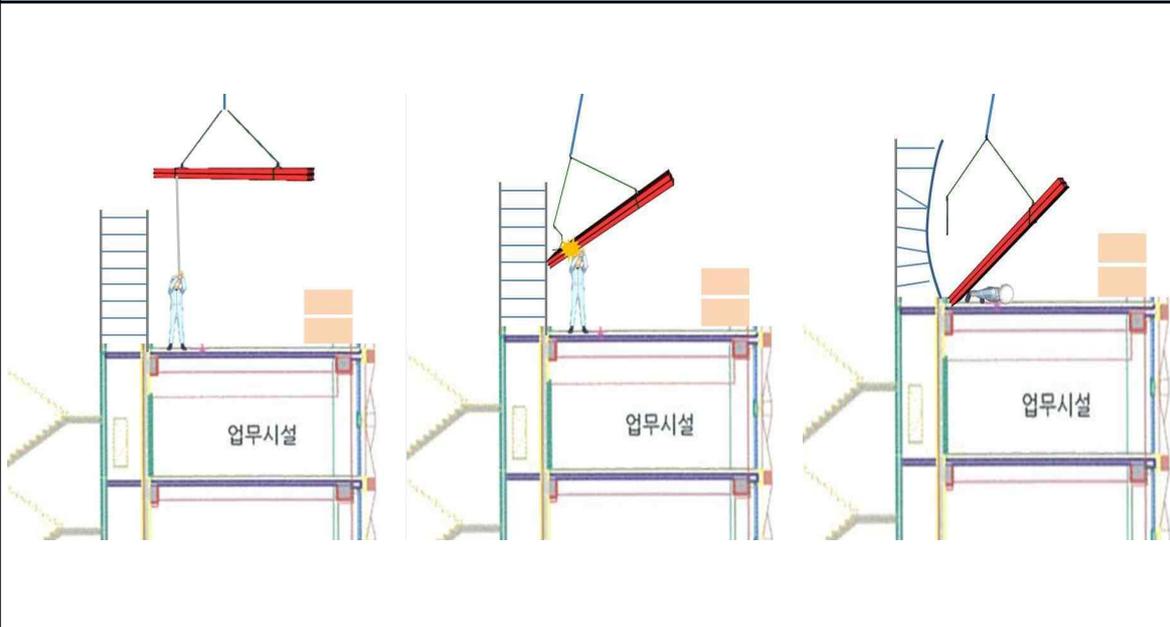


## R.C.S폼 레일부재 인양 중 라운드 슬링이 파단되어 자재 낙하

공사명	○○업무시설 신축	발생일시	2017.05.13(토) 13:40경
재해형태	낙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공사규모	지하4층, 지상10층 1개동
재해개요	2017.05.13.(토) 13:40경 ○○(주)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상 4층에서 피재자(형틀목공, 48세)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운반되어온 R.C.S폼 레일 부재를 받아 내리기 위해 라운드 슬링에 결속되어 있는 유도로프를 잡고서 당기려는 순간 라운드 슬링이 파단되며 레일 부재가 낙하, 피재자가 머리 및 어깨 등에 맞아 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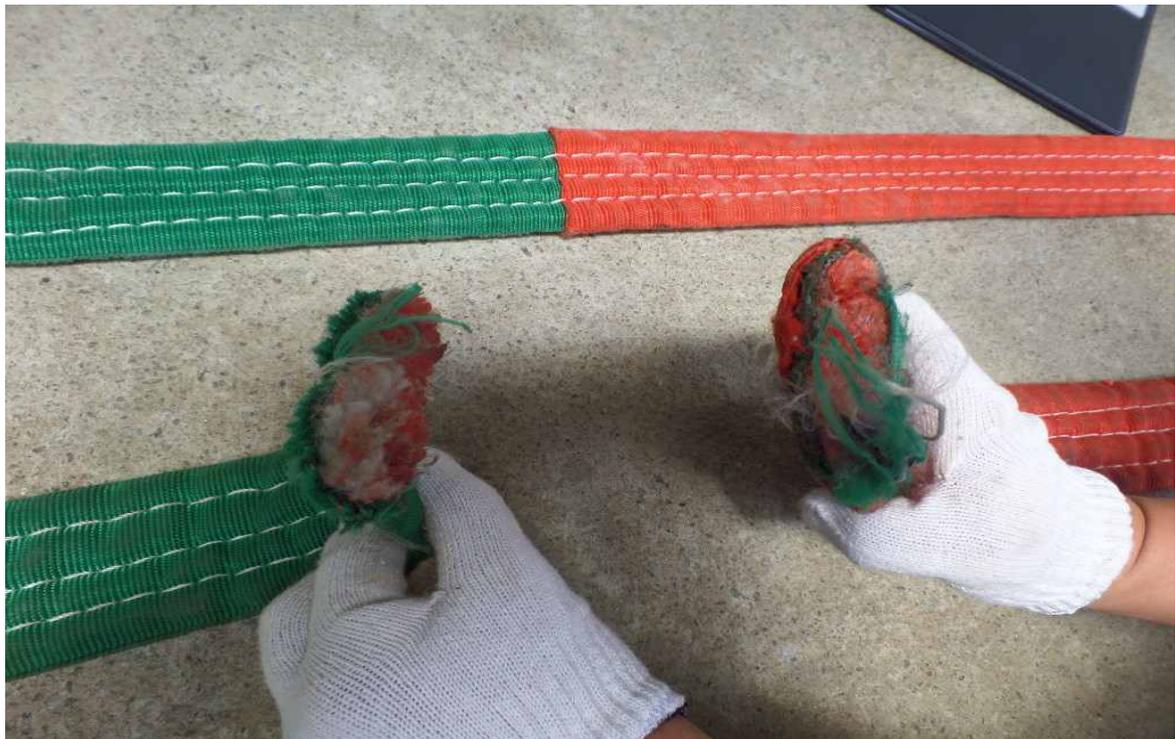
### 재해상황도



<b>안전대책</b>	<p>○ <b>줄걸이 작업 시 섬유로프 등의 손상 방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링으로 R.C.S폼 레일 부재 더미와 같은 각진 형태의 자재, 날카로운 접촉면이 있는 자재를 줄걸이 할 경우에는 슬링과 자재 4변 모퉁이 접촉부에 별도의 보호대(완충재)를 설치하여 슬링이 절단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ul> <p>○ <b>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시 운반경로 출입 통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 운반하는 경우 자재 적치 장소에 간섭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사전 고려하여 인양 중인 자재가 작업자의 머리위를 지나지 않도록 작업 진행</li> </ul> <p>○ <b>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이행 소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등의 적정 유해·위험방지 업무를 수행</li> </ul>
-------------	---



재해발생 현장전경



라운드 슬링 파단면(날카로운 자재에 의한 전단 파괴 형태를 보임)